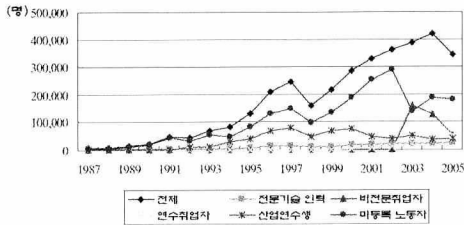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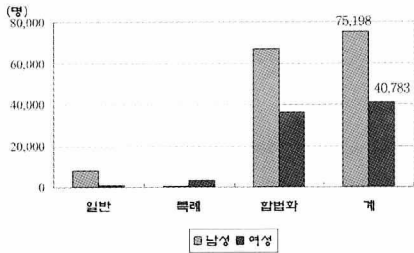
1. 이주노동자의 고용 현황

(1) 연도별 이주노동자 체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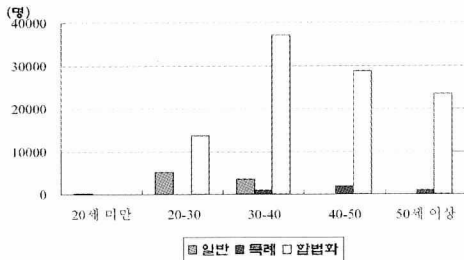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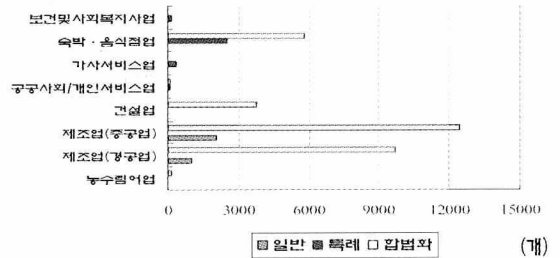
(2) 이주노동자의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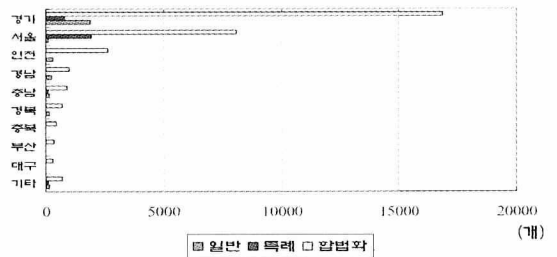
(3) 이주노동자의 연령 분포



(4)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업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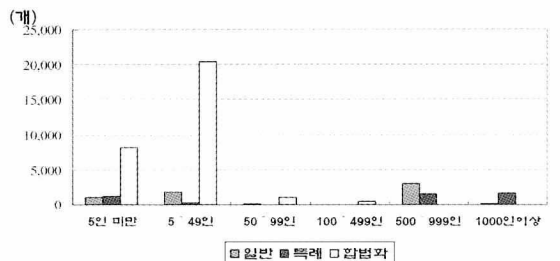


(5)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지역 분포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가구 제조업, 자동차·트레일, 기타기계·장비 제조업 등 생산직 인력난이 심한 노동집약적 업종에 주로 근무하고 있다. 국내 산재보험통계에 따르면 광업을 제외하고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산업별 천인율, 도수율, 강도율이 가장 높았다.

(6)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규모



국내 산재보험통계에 따르면 강원, 경남, 인천, 전북,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순으로 재해율이 높았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는 50인 미만,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5~9인, 10~29인 사업장의 순으로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특성으로 인해 재해율이 높다.

(7) 평균체류 기간(2005년 6월 25일 현재)

일반 이주노동자의 경우 평균 3.9개월 동안 체류하고 있으며, 특례자의 경우 11.8개월, 합법화 근로자는 50.1개월의 체류기간으로 보이고 있다.

국내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입사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가 전체 산업재해근로자의 4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이주노동자 노동시간

연도	조 사 자	월 평균 노동시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
'02	설동훈 등	273	50~60시간(23.3%) 60~80시간(43.4%)
'03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65~74시간(41.0%) 75시간 이상(25.5%)
'05	국회 노동기 본권 연구모임 (합법+미등록)	280.4	
	유길상 등(E-9)	228.3	
	아시아의 친구들 등		40~60시간(48%) 60~80시간(42%)

이주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연장, 심야근무가 한국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초과 근무일수는 평균 5~7일이 6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공휴일에도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

우도 22.2%로 조사되었다.

(9) 이주노동자 평균임금

연도	2002	2005	
조사 단위	설동훈 등	국회노동기본권연구모임 (합법+미등록)	유길상 등
평균 임금	995,816 (48.9%)	974,996 (41.5%)	1,003,000 (42.1%)

(10)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체의 사회보험 가입률

구분	일 반	특 례	합 법
고용	98.2	52.9	46.8
건강	65.4	5.6	11.2
산재	97.6	51.7	45.7
연금	-	2.3	20.6

(11) 기타 사항

① 한국생활 고충 중 심각한 사항에 대해

내 용	백분율
장시간 노동	56.6%
낮은 임금수준	41.2%
열악한 작업환경	41.1%
빠른 작업속도	41.1%
임금체불	39.0%
직업병 및 산업재해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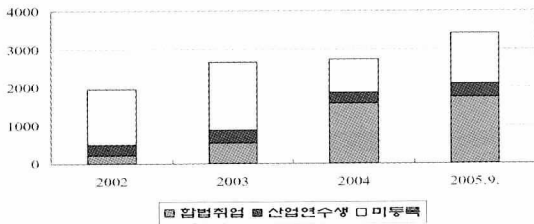
② 다수의 인권침해 보고사항으로는 임금체불, 비인간적인 대우, 폭행, 여권압수, 산재적용 제외 등이 있다.

2.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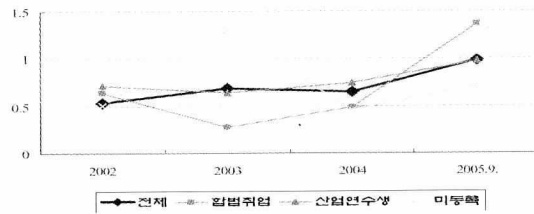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재해율이 전체 노동자의 재해율 보다 높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97년 Wuetal보고서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재해율이 7.17(남자 7.61, 여자 5.28)로 보고되고 있고, 1993년 Dooseetal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웨덴 노동자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재해율이 더 낮다고 하고 있다.

(1) 산재보험자료에서의 이주노동자 재해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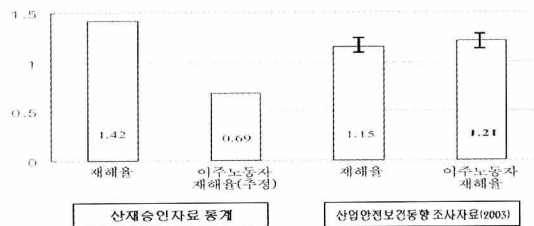


(2) 산재보험자료에서의 이주노동자 재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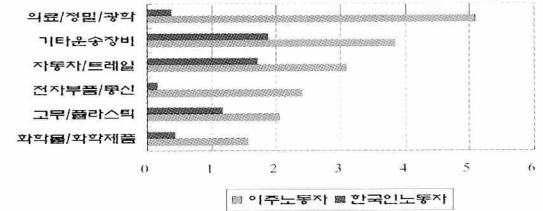


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601건으로 18.7%, 금속가공업은 1,410건(16.5%), 화학제품제조업 919건, 10.7%, 기계기구 제조업은 656건의 7.7%, 섬유업 443건, 5.2% 순의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3) 제조업 근무 이주노동자 재해율



(4) 제조업 근무 이주노동자 업종별 재해율



(5) 설문조사 자료의 이주노동자 재해율

연도	조사자	조사 지역	대상자 수(명)	업무상사고 경험율(%)	업무상 질병 경험율(%)
'99	최재욱 등	안산	342	1년간 8.2	
	설동훈 등	수도권, 경상도	1,078	32.2	23.4
'02	노동건강연대 등	마석	220	52.0	30.5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전국	287	37.0	36.9
'05	아시아 친구들 등	안양, 고양	134	29.6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 3년간 산재경험율이 19.6%이고, 성수동 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 5년간 산재경험율이 19.6%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6) 기타 사항

- ① 안산지역 이주노동자 산재조사에서 발생형태는 무리한 동작이 14.3%로 가장 많았고, 유해물질접촉, 추락 및 낙하비레 각각 12.8%로 많이 발생하는 재해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상해종류는 찰과상이 23.1%로 가장 많았고, 염좌도 15.4%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해로 입은 상해부위는 손가락이 42.2%로 단연 높았다.
- ② 반월 - 시화공단 산재 이주노동자 조사에서는 절단 상해가 74.1%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인 70.7%가 손가락 재해를 입었다.

③ 입사 후 최초 산재발생까지의 기간은 3개월 이내가 56.5%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가 46.2%로 가장 많았다. 국내 산재보험통계에 따르면, 입사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자가 전체 산재의 46.6%를 차지하고 있다.

3. 산업재해 후 치료 및 재활

(1) 업무 중 사고 발생시 치료비 부담

구 분	최재욱 등 (1999)	설동훈 등 (2002)	노동건강 연대 (2002)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2003)
사업주 전액 부담(공상)	36.8	31.4	23.9	38.6
개인 전액 부담	26.3	27.2	39.8	45.47
산재보험 처리	10.5	12.7	-	(16.9)
사업주와 공동 부담	-	9.1	31.8	9.1

(2) 기타 설문 내용

①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내용	백분율
설동훈, 2002	47.6%
노동건강연대, 2002	39.1%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2003	49.3%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상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할 경우 강제추방되는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제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출입국관리국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는데 중

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② 산업재해 사고가 재취업에 미친 영향

내용	백분율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2.4%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46.4%
취업은 할 수 있었지만 월급수준이 낮아졌다	6.4%
신체장애 때문에 힘이 들어 취업할 수 없었다.	14.5%

③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재활교육 인지 여부

내용	백분율
들은 적이 없다.	82.8%

④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

내용	백분율
진료비를 감당하기 힘들다.	36.1%
병원 갈 시간이 필요하다.	30.5%

⑤ 의료기관 이용시 느끼는 어려움

내용	백분율
치료비부담	44.1%
의사소통의 어려움	28.6%
미등록 상태 불안	16.7%
기타	10.7%

4.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요인

가. 일반적인 재해의 특성과 맞물리는 귀속요인

(1) 국내 산재보험통계에 따르면 광업을 제외하고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산업별 천인율, 도수율, 강도율이 가장 높다.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율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입사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자가 전체 산재의 46.6%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는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 소규모 사업장에 배치되는 경향이 크며, 체류기간의 정함으로 인해 인력이 순환되어 근속기간이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이주노동자의 불리한 노동조건

① 노동시간의 장기화

작업시간이 많을 수록 산재발생까지의 평균 시간이 짧음, 하루 10시간 미만 작업자 2.26년, 10시간 이상 작업장 1.70년

② 휴일보장 미비

③ 유해요인 노출

③ 노동강도 강화

연도	조사자	조사 지역	대상 자수	심각한 유해환경
'02	설동훈 등	수도권, 경상도	1,078명	소음 61.2%, 분진 48.4%, 불편한자세 39.0%, 반복작업 37.5%
	노동건강연대 등	마석	220명	분진 67.4%, 중량물 취급 39.0%, 소음 38.1%, 화학물질 34.8%
'03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전국	287명	중량물 취급 60.6%, 분진 55.8%, 소음 53.4%, 불편한 자세 51.7%

(3) 작업장내 이주노동자와의 안전보건 의사소통 미흡(언어 및 문화의 차이)

- ① 언어소통 미흡으로 작업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 ②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응답자는 평균 2.43년 만에 산업재해 발생, 한국어에 매우 미숙했던 경우 평균 1.06년 만에 산업재해 발생(p=0.001)
- ③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이주노동자가 잘하는 노동자에 비해 산재사고율이 3.3배 더 높음
- ④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서비스 미가동 : 안전보건교육, 건강검진(일반, 특수), 작업환경측정, 산재보험, 재활훈련 등
- ⑤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교육 이수율

연도	조사자	조사 지역	대상 자수	안전보건교육 이수율(%)
'01	이승길	시화-반월공단	58	31.0
'02	설동훈 등	수도권, 부울경, 대구, 경북	1,078	26.9
'03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전국		287	39.9
'05	설동훈 등	주로 수도권	685	
'05	아시아 친구들 등	안양, 고양	134	30.3

자신의 작업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몰랐다가 34.5%와 거의 몰랐다가 19.0%로 응답했다.

(6) 이주노동자의 건강진단 실시율

연도	조사자	조사 지역	대상 자수	건강진단 실시율
'99	최재욱 등	안산	342	42.4
'01	이승길	시화-반월공단	58	29.3
'02	설동훈 등	수도권, 부울경, 대구, 경북	1,078	44.6
	노동건강연대 등	마석	220	30.5
'03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전국	287	47.3
'05	설동훈 등	주로 수도권	685	28.9
	아시아 친구들 등	안양, 고양	134	48.4

5. 향후과제

- (1) 재해율이 높은 업종 및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2)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 (3) 이주노동자 의사소통을 위한 양방의 교육 및 지원
- (4) 안전보건교육, 건강검진, 산재보험 등 산업안전보건서비스의 실질적 제공
- (5)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 무 검토
- (6) 전국적 규모의 지속적인 이주노동자 산재 실태 조사
- (7) 건강보험 의무 가입 및 이주노동자 의료지원 기관의 홍보 